

『인천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의 기준 및 최우선변제금』 연혁

기준시점	지 역	소액임차인 보증금 범위	최우선변제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
1990.02.19 ~ 1995.02.28	인천직할시	2,000만원 이하	700만원
1995.03.01 ~ 1995.10.18	인천직할시 (강화군, 옹진군, 김포군 검단면 포함 1))	2,000만원 이하	700만원
1995.10.19 ~ 2001.09.14	인천광역시	3,000만원 이하	1,200만원
	강화군, 옹진군	2,000만원 이하	800만원
2001.09.15 ~ 2008.08.20	인천광역시 중 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에 따른 「과밀억제권역」 지역	4,000만원 이하	1,600만원
	인천광역시 중 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에 따른 「과밀억제권역」에 포함되지 않은지역 (강화군, 옹진군 제외)	3,500만원 이하	1,400만원
	강화군, 옹진군	3,000만원 이하	1,200만원
2008.08.21 ~ 2010.07.25	인천광역시 중 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에 따른 「과밀억제권역」 지역	6,000만원 이하	2,000만원
	인천광역시 중 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에 따른 「과밀억제권역」에 포함되지 않은지역 (강화군, 옹진군 제외)	5,000만원 이하	1,700만원
	강화군, 옹진군	4,000만원 이하	1,400만원
2010.07.26 ~ 2013.12.31	인천광역시 중 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에 따른 「과밀억제권역」 지역	6,500만원 이하	2,200만원
	인천광역시 중 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에 따른 「과밀억제권역」에 포함되지 않은지역 (강화군, 옹진군 제외)	5,500만원 이하	1,900만원
	강화군, 옹진군	4,000만원 이하	1,400만원
2014.01.01 ~ 2016.03.30	인천광역시 중 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에 따른 「과밀억제권역」 지역	8,000만원 이하	2,700만원
	인천광역시 중 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에 따른 「과밀억제권역」에 포함되지 않은지역 (강화군, 옹진군 제외)	6,000만원 이하	2,000만원
	강화군, 옹진군	4,500만원 이하	1,500만원

2016.03.31 ~ 2018.09.17	인천광역시 중 「수도권경비계획법」에 따른 「과밀억제권역」 지역	8,000만원 이하	2,700만원
	인천광역시 중 「수도권경비계획법」에 따른 「과밀억제권역」에 포함되지 않은지역 (강화군, 옹진군 제외)	6,000만원 이하	2,000만원
	강화군, 옹진군	5,000만원 이하	1,700만원
2018.09.18 ~ 2021.05.10	인천광역시 중 「수도권경비계획법」에 따른 「과밀억제권역」 지역	1억원 이하	3,400만원
	인천광역시 중 「수도권경비계획법」에 따른 「과밀억제권역」에 포함되지 않은지역 (강화군, 옹진군 제외)	6,000만원 이하	2,000만원
	강화군, 옹진군	5,000만원 이하	1,700만원
2021.05.11 ~ 2023.02.20	인천광역시 중 「수도권경비계획법」에 따른 「과밀억제권역」 지역	1억 3천만원 이하	4,300만원
	인천광역시 중 「수도권경비계획법」에 따른 「과밀억제권역」에 포함되지 않은지역 (강화군, 옹진군 제외)	7,000만원 이하	2,300만원
	강화군, 옹진군	6,000만원 이하	2,000만원
2023.02.21 ~ 현재	인천광역시 중 「수도권경비계획법」에 따른 「과밀억제권역」 지역	1억 4천500만원 이하	4,800만원
	인천광역시 중 「수도권경비계획법」에 따른 「과밀억제권역」에 포함되지 않은지역 (강화군, 옹진군 제외)	8,500만원 이하	2,800만원
	강화군, 옹진군	7,500만원 이하	2,500만원

1) 1995. 3. 1. 강화군, 옹진군, 김포군 검단면이 인천광역시로 편입됨

출처: 부동산케이스노트 <https://realscasenote.com/>